

수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2018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2018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2938 판결

### 전 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 종결 2017. 4. 4

판결 선고 2017. 4. 18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2938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8434㎡ 중 별지 1감정도 1, 2, 3, 4, 5,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지부분 1층 건물 52㎡ 및 같은 감정도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층 건물 55㎡, 같은 감정도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부분 소각장 및 김치저장고 23㎡ 를 철거하고, 위 각 대지를 인도하며,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63㎡ 중 별지 2감정도 1, 2, 3,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옹벽선 및 같은 감정도 4, 5,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구름다리 7㎡를 각 철거하고, 위 각 대지를 인도하라.

##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8434㎡ 중 별지1감정도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1층 건물 52㎡ 및 같은 감정도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부분 2층 건물 55㎡ 철거 및 그 대지 인도청구에 대한 주장 및 판단피고는 먼저, 제1심 판결은 별지1감정도의 현황에 근거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를 명하였는데, 위 감정도의 현황은 원고가 당초 제출한 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원고는 위 당초 제출한 도면에 의하여 위 각 건물의 2/3 정도 부분의 철거를 구하였는데, 제1심이 이를 초과하여 별지1감정도에 의해 4/5부분의 철거를 인정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점에 등에 비추어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건물의 실제 현황은 원고의 소장에 첨부된

도면이 아닌 별지1의 감정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측량감정결과에 따라 작성된 별지1감정도 기재 현황에 근거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의 청구 중 건물의 일부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그 실현이 불가능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피고의 건물의 일부가 원고의 토지에 걸쳐져 있는 경우 원고로서는 그 일부의 철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물 일부의 철거로 인해 나머지 부분의 효용이 크게 감소한다고 하여 일부의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위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매우 적은 점, 위 건물은 교육용 시설인 점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위 건물이 교육용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권리 주장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063㎡ 중 별지 2감정도 4, 5,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구름다리 7㎡의 철거 및 대지 인도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대지 부분은 소하천구역 및 그 예정지에 포함되는 등 포락에 의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25585판결 등 참조), 을 3, 13호증의 각 영상, 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구름다리의 밑은 대부분 하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하천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원상복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1992년경 위 구름다리를 설치한 후 20년 이상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H소재 토지 등에 있는 피고의 청소년 수련원으로 통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부분 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거나 관습법상 통행권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구름다리가 설치된 시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1992년에 구름다리를 설치한 후 계속하여 이를 통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관습법상 통행권은 그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위 구름다리가 소재한 토지는 2평 정도로 극히 작은 면적인 점, 위 구름다리는 청소년수련장으로 통하는 것으로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권리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각장, 김치저장고의 철거 및 대지 인도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각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염우영판사    정종건판사    지은희

별지